

2021년 3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

「서울특별시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」 제3조 제3항에 따라, 2021회계연도 3분기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고드립니다

□ 관련근거

- 지방재정법 제43조 (예비비)
-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 제19조 (예비비의 사용)

□ 예비비 사용사유

- 『7호선 연장구간(온수~부평구청) 전동차 제작구매 계약금액조정』
소송종결에 따른 물품대금 지급
 - 『7호선 연장구간(온수~부평구청) 전동차 제작구매』와 관련하여 제작사((주)로윈)에서 서울교통공사로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요청하였으나 조정방식 차이로 반영이 안되자 소송을 제기하였고 서울교통공사에서 최종 패소함.
 - ※ 서울시와 도시철도공사(서울교통공사) 간 차량구매 위탁계약 체결('09.04.30)
 - 우리시는 공사와 전동차 제작구매 위탁 계약한 바에 따라 해당 소송 패소에 따른 물품대금, 이자 등 총 2,930,261,810원 중 건설협약에 따른 분담 비율(하단 ※ 참조)에 따라 서울교통공사에 124,643,330원을 지급
 - ※ 지자체간 건설분담비율 : 서울시 0.436km(4.254%), 인천시 2.3975km(23.390%), 부천시 7.4165km(72.356%)

□ 예비비 사용내역

(단위 : 천원)

부서명	예산과목		예산액	증감내역	
	세부사업	통계목		증	감
도시철도설비부	7호선연장공사 물품대금청구소송	배상금 등	124,644	124,644	-

7호선 연장구간(온수~부평구청) 전동차 제작구매 계약금액 조정 소송

□ 소송 개요

- 사건 명 :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6531 물품대금
- 당사자
 - 원고 : (주)로윈(소송수계인 : (주)다원시스('17.2 합병))
 - 피고 : 서울시도시철도공사(소송수계인 : 서울교통공사('17.5.))
 - 독립당사자 : 우리은행(주)로윈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확보한 은행)
- 제기일자 : '14.05.15.
- 소송사유
 - 공사와 계약상대자인 (주)로윈과 물가변동에 의한 조정방법 의견 상이로 계약금액 조정 불성립에 따른 (주)로윈이 소송제기
 - 서울시도시철도공사 : 품목조정율로 조정 요청
 - (주)로윈 : 지수조정율로 조정 의견
 - 소송가액 : 3,420백만원

□ 추진 경위

- '09.04.30. : 서울시와 공사간 차량구매 위탁계약 체결
- '10.06.11. : 전동차 계약체결(공사↔로윈)
- '12.06.11. : 계약금액(물가변동분) 조정 요청(로윈→공사)
- '12.07.06. : 계약금액(물가변동분) 조정 회의(공사→로윈)
- '12.07.27. : 계약금액(물가변동분) 조정 거부(공사)
- '14.05.08. : 계약 일부 미이행(지정예비품 및 기술자료 납품 불이행)으로 인한 계약해지
- '14.05.15. : 계약금액(물가변동분) 조정 불성립에 따른 소장 접수(로윈)
- '16.11.16. : 1심 판결(서울동부지방법원)
 - 물가변동(지수조정율)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금(물품대금)을 로윈에 지급
- '16.12.16. : 항소(공사, 우리은행)
- '17.07.26. : 2심 판결(서울고등법원)
 - 물가변동(지수조정율)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금(물품대금)을 우리은행에 지급

- '17.08.04. : 상고 포기(공사)
 - 법률자문 및 소송심의회 결과(실익없음) 반영
- '17.08.23. : 상고(로원)
- '20.12.10. : 대법원 판결
 -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서울고등법원 환송
- '21.07.16. : 환송심 화해권고결정(서울고등법원)
 -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금 분할지급(로원, 우리은행)
- '21.08.11. : 7호선 물품대금 청구사건 관련 회의개최
 - 서울시, 인천시, 부천시, 서울교통공사 참석 및 청구(안) 의견조율
- '21.09.07. : 기관의견 반영 물품대금 청구(안) 송부(공사→시)
 - 지연이자, 잉여금, 인건비 미적용 등 조정된 청구(안) 제시
- '21.09.15. : 물품대금 청구(안) 수용 회신(시→공사)
 - 청구(안)에 대해 인천시 및 부천시 “의견없음(수용)” 회신
- '21.09.15. : 물품대금 최종 청구(공사→시)
- '21.09.15. : 7호선 전동차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소송결과 보고
- '21.09.30. : 물품대금(124,643,330원) 최종 지급(시→공사)
 - 인천시(9.28 납부) 및 부천시(9.29 납부) 납부완료

□ 소송 결과

○ 1심 선고 결과

- 사 건 :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합103556 물품대금
- 원 고 : (주)로원[현재, (주)다원시스]
- 피 고 : 서울시도시철도공사[현재 서울교통공사]
- 독립당사자참가인 : 우리은행
- 판결주문 : 2016. 11. 16.(수) 선고
 - 피고(공사)는 원고(로원)에게 32억 및 기간 법정이자 지급
- 판결금 지급(3,974,280,793원, 2016.12.02. 공사→로원)
 - 원금 3,201,055,000원, 이자 773,225,793원
- 소송결과
 - 계약금액 조정방식은 지수조정률이 합리적임.
 - 물품대금 증액분은 참가인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음.

○ 2심 선고 결과

- 사 건 : 서울고등법원 2016나2086037 물품대금
- 판결주문 : 2017. 7. 26.(수) 선고
- 피고(공사)는 독립당사자(우리은행)에 3,201,055천원 및 이자 901,882천원 지급
 - 원고(다원시스)는 피고에게 3,974,280천원 및 이자 150,216천원 지급
- ※ 공사 잉여금 발생(21,559,765원) = 4,124,496,648원(3,974,280,793원+ 150,215,855원)-4,102,936,883원(3,201,055,000원+901,881,883원)
- 소송결과
- 계약금액 조정방식은 지수조정률 적용.
 - 물품대금 증액분은 참가인에게 양도되었다고 인정됨.

○ 상고심 선고 결과

- 사 건 : 대법원 2017다256439 물품대금
- 판결주문 : 2020. 12. 10.(목) 선고
- 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.
 - 독립당사자(우리은행)가 공탁한 4,945,537,978원은 공사에 권한이 있음.
 - 피고(공사)는 원고(로윈)에 3,316,621,500원 지급 및 2차 채권에 대한 금액 1,470,465,753원을 불확지공탁함.
- ※ 공사 잉여금 발생(158,450,725원) = 4,945,537,978원(4,102,936,883원+ 842,601,095원)-4,787,087,253원(3,316,621,500원+1,470,465,753원)
- 소송결과
- 계약금액 조정방식은 지수조정률 적용.
 - 물품대금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에 대해 판단 유보함.

○ 파기 환송심 결과

- 사 건 :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6531 물품대금
- 2021. 07. 16.(금) 화해권고결정 결과
- 피고(공사)가 지급한 1심 판결금 3,974,280,793원은 변동없음
 - ※ 해당금액 및 이자에 대해 원고(로윈) 및 독립당사자(우리은행)에 분할지급됨
(다원시스(로윈):3,316,621,500원, 우리은행:1,470,465,753원)
 - 1심 판결금에 대한 물품대금 이자율을 상법6% 적용하여 청구(1,116,447,142원)
 - 소송 총비용은 각자부담(소송비용 : 112,139,360원)

지자체별 분담금액

단위: (원)

구 분		계	서울특별시	인천광역시	부천시
① 계 : 5,202,867, 295원	물품대금 (원금)	3,974,280,793	-	-	-
	이자(6%)	1,116,447,142	-	-	-
	소송금액	112,139,360	-	-	-
② 집행잔액		2,092,594,986	-	-	-
③ 소송중 잉여금		180,010,490	-	-	-
청구금액 (①-②-③)		2,930,261,810	124,643,330	685,395,380	2,120,223,100
분담비율		10.2km	0.436km (4.254%)	2.3975m (23.390%)	7.4165km (72.356%)

※ ② 집행잔액

- ㉠ 지정예비품, 기술자료 납품 불이행으로 계약일부 해지에 따른 계약이행보험 보증금 청구 소송 승소 후 확보
- ㉡ 계약 일부해지에 따른 시운전유보금 미지출
- ㉢ 예비품, 기술자료 구매비 등 지출

보증보험금(원)㉠	시운전유보금(원)㉡	지출금액(원)㉢	집행잔액(원) (㉠ + ㉡ - ㉢)
5,297,834,603	1,478,120,800	4,683,360,417	2,092,594,986

※ ③ 잉여금

- 항소심 이자차액(21,559,765원) : 회수금(원고→피고, 4,124,496,648원) 및 지급금(피고→독립당사자, 4,102,936,883원) 차액
- 상고심 이자차액(158,450,725원) : 회수금(독립당사자→피고, 4,945,537,978원) 및 지급금(피고→원고, 독립당사자, 4,787,087,253원)

물품대금 및 소송금액 내역

구 분	물품대금	이자(6%)	소송금액
1심	○원금: 3,974,280,793원	○지연이자: 1,116,447,142원	69,800,000원
항소심			35,729,600원
상고심			-
파기 환송심	-	-	5,509,760원
공탁사건	-	-	1,100,000원
계 (5,202,867,295원)	3,974,280,793원	1,116,447,142원	112,139,360원